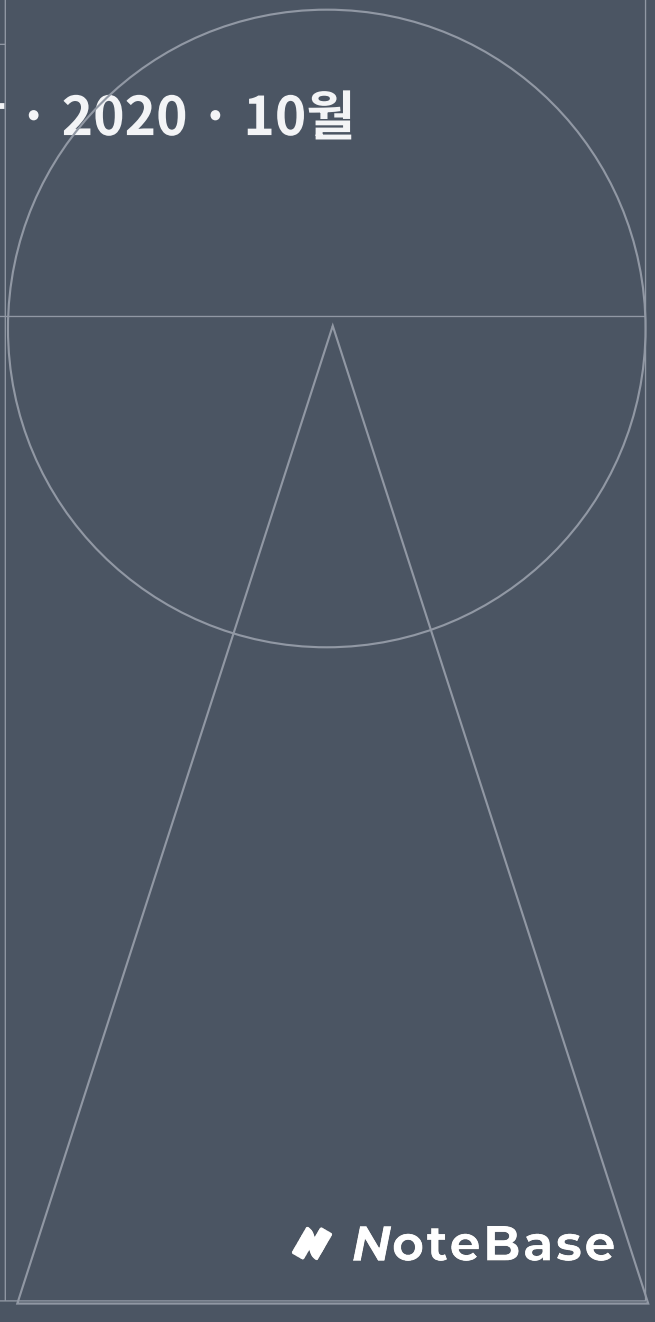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문 1.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시기능

② 토지유통 자료

③ 토지세부과 자료

④ 토지정책결정에 정보제공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공통 기능과 각 제도의 고유 기능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법지적: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소유 등 법적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여 권리관계와 행정의 기준으로 삼는 지적이다. 결정 차이축: 법적 등록과 공시 중심 여부 / 키워드: 등록, 공시, 권리보호
다목적지적: 법지적의 등록정보를 과세·계획·개발·환경·정책 등 여러 목적에 활용하도록 확장한 지적이다. 결정 차이축: 다양한 행정 활용과 정책결정 지원 여부 / 키워드: 활용, 분석, 정책지원
공통점: 둘 다 토지의 위치·경계·면적 등 기초정보를 등록·공시하여 토지거래와 과세의 기준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그 정보를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넓게 활용하는 것은 다목적지적으로 확장되면서 강조된 기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시기능은 법지적의 핵심 기능이지만, 다목적지적도 토지의 등록·공시를 기초로 삼으므로 두 제도가 함께 갖는 공통 특징에 해당한다.
② O: 토지유통(거래) 자료 제공은 법지적의 등록정보가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고 다목적지적도 이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두 제도의 공통 특징이다.
③ O: 토지세 부과 자료 제공 역시 두 제도 모두 토지 기초정보를 과세의 기준 자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 특징이다.
④ X: 토지정책결정에 대한 정보제공은 법지적의 본래 목적(권리의 공시·보호)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고, 다목적지적으로 확장되면서 강조된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두 제도가 함께 갖는 공통 기능(①②③)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기능을 찾아야 한다. ④ 토지정책결정 정보제공은 다목적지적으로 확장되면서 강조된 기능이어서 공통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①②③(공시·토지유통 자료·토지세부과 자료)을 다목적지적에만 있는 기능으로 오해해 정답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념비교형 문제에서는 발문이 '공통점'을 묻는지 '차이점'을 묻는지, 그리고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법지적이 가진 기능(공시, 토지거래·과세 자료)은 다목적지적도 포함하므로 공통분모이고, 다목적지적으로 확장되면서 더해진 정책결정 지원 등은 공통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가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법지적 기능(공시·토지거래·과세 자료)은 다목적지적도 공유하는 공통분모이고, 토지정책결정 정보제공은 다목적지적의 확장 기능이다.

NoteBase

문 2.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하여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을 정하였는데, 이 중 중부원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북위 38°, 동경 129°

② 북위 38°, 동경 127°

③ 북위 37°, 동경 125°

④ 북위 38°, 동경 12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의 서부원점·중부원점·동부원점 좌표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조사사업의 3원점은 모두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하고, 경도만 서부 125도, 중부 127도, 동부 129도로 나뉜다.
중부원점은 북위 38도·동경 127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북위 38도는 맞지만 동경 129도는 중부원점이 아니라 동부원점의 기준이다. 틀린 부분은 동경 129도이고, 올바르게는 북위 38도·동경 127도이다.
② O: 북위 38도·동경 127도는 중부원점의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동경 125도는 서부원점 쪽 값인데 북위 37도가 틀렸다. 세 원점은 모두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올바르게는 북위 38도·동경 125도이다.
④ X: 북위 38도·동경 125도는 중부원점이 아니라 서부원점의 기준이다. 틀린 부분은 동경 125도를 중부원점 값으로 본 점이고, 올바르게는 서부원점이다.

오답 포인트

세 원점은 위도가 모두 38도로 같고 경도만 125도, 127도, 129도로 달라진다. 위도는 같고 경도만 이동한다는 구조를 놓치면 ①과 ④를 중부원점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세 원점의 북위가 모두 38도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경도를 서부 125도, 중부 127도, 동부 129도의 순서로 대응시키면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서 125도, 중 127도, 동 129도이며 북위는 모두 38도이다.

NoteBase

문 3. 지번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북동기번법은 한문자(漢文字)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② 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이다.

③ 지역단위법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④ 기번제도(filiation system)는 인접지번 또는 자릿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번 부여방법별 적용 상황과 구별 기준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북동기번법은 기번의 시작점을 동북 쪽에 두는 방식으로, 한문자 사용 지역의 배열 감각과 잘 맞는 방식이다.
사행식은 필지 배열이 불규칙할 때 현지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지역단위법은 일정 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고, 지역이 지나치게 넓거나 도면 매수가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도엽단위법이 유리하다.
기번제도는 원지번의 계통이 새 지번에 남도록 구성하여 지번의 유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북동기번법은 한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적합한 방식으로 본다. 기번의 진행 방향과 배열 감각이 한자 문화권의 지번 운용과 잘 맞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O
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반듯하지 않고 불규칙한 지역에서 현지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불규칙한 배치를 기계적으로 구획하기보다 실제 진행 경로에 따라 번호를 매긴다는 점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이다. 지역단위법은 넓은 지역과 많은 도면을 처리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도엽단위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올바르게는 "도엽단위법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기번제도는 원지번의 번호를 바탕으로 인접지번이나 자리수를 결합하여 새 지번을 구성하므로, 지번만 보아도 분할·변동의 계통적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지역단위법과 도엽단위법의 적용 범위를 서로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③은 "넓고 지적도 매수가 많다"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도엽단위법의 설명이라는 점을 잡아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번 부여방법 문제는 먼저 적용 기준을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기번의 시작 위치를 묻는지, 불규칙 배열에서의 부여 순서를 묻는지, 지역 전체 단위인지 도엽 단위인지를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넓고 도면이 많으면 도엽단위법이고, 불규칙 배열이면 사행식이며, 원지번 계통을 남기면 기번제도이다.

NoteBase

문 4. 토지의 경계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의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경계는 현장의 지형지물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_____㉠_____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를 구분하는 _____㉡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관련 법률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_____㉢를 _____㉣로 보고 있다.

① ㉠: 현실경계, ㉡: 도상경계, ㉢: 도상경계, ㉣: 법정경계
② ㉠: 점유경계, ㉡: 현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③ ㉠: 사실경계, ㉡: 도상경계, ㉢: 사실경계, ㉣: 법정경계
④ ㉠: 점유경계, ㉡: 도상경계, ㉢: 점유경계, ㉣: 법정경계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현실경계, 도상경계, 법정경계의 개념과 상호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현장의 지형지물로 확인하는 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나누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본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현실경계는 현장의 담장, 도로, 구거 같은 지형지물로 체감되는 실제 경계이다.
도상경계는 지적도 등 도면에 등록된 선으로 표시되는 경계이다.
법정경계는 법률상 권리범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계이다.

핵심 구분

현실경계는 현장에서 보이는 경계이고, 도상경계는 공부에 등록된 경계이다. 지적 관련 법률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본다. 점유경계나 사실경계는 실제 점유나 사실상 이용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으나, 이 문장의 분류 기준이나 원칙적 법적 기준으로 쓰인 용어는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현실경계, ㉡은 도상경계, ㉢은 도상경계, ㉣은 법정경계로 짝지은 것이다. 현장의 지형지물로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경계이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를 구분하는 것은 도상경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를 법정경계로 본다.
② X : ㉠을 점유경계로, ㉡을 현실경계로, ㉣을 사실경계로 둔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점유경계", "현실경계", "사실경계"이다. 올바르게는 ㉠ 현실경계, ㉡ 도상경계, ㉣ 법정경계이다. 점유 상태는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실질적 분류나 원칙적 법적 기준과 같지 않다.
③ X : ㉡과 ㉣은 맞지만 ㉠과 ㉢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사실경계"이다. 올바르게는 ㉠ 현실경계, ㉢ 도상경계이다. 이 문제의 실질적 분류 용어는 현실경계와 도상경계이지 사실경계가 아니다.
④ X : ㉡과 ㉣은 맞지만 ㉠과 ㉢을 점유경계로 둔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점유경계"이다. 올바르게는 ㉠ 현실경계, ㉢ 도상경계이다. 점유 여부는 공부상 경계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현실경계, 사실경계, 점유경계를 모두 현장 쪽 경계로 뭉뚱그리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현장의 지형지물로 확인하는 용어가 무엇인지와, 법이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따로 물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현장 지형지물이 기준이면 현실경계, 도면이나 공부의 등록선이 기준이면 도상경계로 잡는다. 그다음 법률상 기준을 묻는 문장이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상경계가 법정경계가 된다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실경계는 현장경계이고, 도상경계는 도면경계이며, 법정경계는 원칙적으로 도상경계이다.

NoteBase

문 5. 권원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② 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다른 토지에 대한 특정권리를 확인한다.

③ 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문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④ 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이며, 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권원등록제도와 증서등록제도의 공시 대상과 우선권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권원등록제도는 토지의 권리상태를 등록부에 확정적으로 공시하고 국가가 그 권원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증서등록제도는 권리 자체보다 거래문서의 등록 순서로 우선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다.
권원등록제도는 등록된 권리와 등록부가 중심이고, 증서등록제도는 등록된 문서가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권원등록제도는 토지별 등록부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시하여 권리귀속을 분명히 한다.
2번 O: 권원등록제도는 특정 필지의 소유에 수반되는 다른 토지에 대한 지역권 등 부수적 권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번 X: 틀린 부분은 '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문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이다. 이는 증서등록제도의 설명이다. 권원등록제도에서는 문서의 등록 순위가 아니라 등록부에 확정된 권리 자체가 권리판단의 기준이 된다.
4번 O: 권원등록제도는 등록된 소유권을 최종적 권리로 공시하고, 등록 이후 거래의 안전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 또는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진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문서 우선'이라는 표현으로 증서등록제도의 특징을 끌어온 함정이다. 권원등록제도는 문서보다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의 공신력과 국가보증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문서의 등록 순서나 등록문서의 우열을 말하면 증서등록제도에 가깝다. 선지가 등록부상의 권리 확정, 최종적 권리, 국가보증을 말하면 권원등록제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권원등록은 권리 중심·국가보증이고, 증서등록은 문서 중심·등록순위이다.

NoteBase

문 6. <보기>에서 지적제도상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영국
ㄴ. 프랑스
ㄷ. 스위스
ㄹ. 대만
ㅁ. 일본

① ㄴ, ㄹ
②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제도의 적극적 등록주의와 소극적 등록주의를 국가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극적 등록주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현황과 공부의 일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소극적 등록주의는 등록 반영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어서 현황 변동이 공부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문항에서는 영국·프랑스는 소극적 등록주의, 스위스·대만·일본은 적극적 등록주의로 본다.
보기 판단은 ㄱ 영국 X, ㄴ 프랑스 X, ㄷ 스위스 O, ㄹ 대만 O, ㅁ 일본 O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프랑스)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프랑스는 적극적 등록주의 국가가 아니라 소극적 등록주의 국가로 본다.
- 틀린 표현은 프랑스를 포함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스위스·대만·일본이 적극적 등록주의 국가이다.

② X
- ㄹ(대만), ㅁ(일본)은 맞지만 ㄷ(스위스)이 빠져 있어 틀리다.
- 틀린 부분은 적극적 등록주의 국가를 일부만 고른 점이다. 올바르게는 스위스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③ X
- ㄷ(스위스), ㅁ(일본)은 맞지만 ㄴ(프랑스)이 포함되고 ㄹ(대만)이 빠져 있어 틀리다.
- 틀린 표현은 프랑스를 넣은 점과 대만을 뺀 점이다. 올바르게는 프랑스 대신 대만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 ㄷ(스위스), ㄹ(대만), ㅁ(일본)을 모두 고른 것으로 적극적 등록주의 국가의 조합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프랑스와 영국을 지적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 등록주의로 섞어 넣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국가의 발전 정도가 아니라 등록 반영 방식의 분류를 정확히 기억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 분류형 문항은 먼저 보기 하나하나를 O/X로 끊어 판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이 문항은 영국·프랑스를 지우고 스위스·대만·일본을 남기면 바로 ④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적극적 등록주의는 스대일, 소극적 등록주의는 영프라고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7. 간주지적도를 사용하던 지역의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간주토지대장
② 별책토지대장
③ 산토지대장
④ 을호토지대장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간주지적도 지역에서 일반 토지대장 대신 사용한 별도 토지대장의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간주지적도는 일반 지적도로 등록하지 못한 토지를 임야도에 등록하여 지적도처럼 취급한 것이다.
이 지역의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과 별도로 관리하였고, 그 명칭은 별책토지대장·산토지대장·을호토지대장이다.
'간주지적도'라는 말이 붙는다고 해서 '간주토지대장'이라는 공식 명칭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간주토지대장'이라는 명칭이다. 올바르게는 간주지적도 지역의 별도 대장 명칭이 별책토지대장·산토지대장·을호토지대장이다.
② O: 별책토지대장은 간주지적도 지역 토지를 일반 토지대장과 별도로 관리할 때 사용한 명칭에 해당한다.
③ O: 산토지대장도 간주지적도 지역에서 사용한 별도 토지대장 명칭에 해당한다.
④ O: 을호토지대장 역시 간주지적도 지역에서 사용한 별도 토지대장 명칭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발문의 핵심은 '간주지적도'라는 도면 성격이 아니라 '토지대장의 실제 명칭'이다. '간주지적도'라는 용어를 보고 ①의 간주토지대장을 자연스럽게 짝지으면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주지적도 관련 문제는 도면 이름과 대장 이름을 분리해서 본다. 대장 명칭이 별책·산·을호의 3종인지 확인하고, 발문 용어를 그대로 붙인 조어는 먼저 의심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간주지적도 대장 3종은 별책·산·을호이고, 간주토지대장은 없다.

NoteBase

문 8. 고구려 시대의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장부에는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도전정, 전적, 전안 등 명칭을 사용하였다.

② 군사작전상, 행정상 필요한 지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다.

③ 면적단위로는 두락제와 결부제를 사용하였고 토지도면으로 근강국수소간전도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④ 정전제를 실시하였으며, 풍백의 지휘를 받아 봉가가 지적을 담당하였고 측량실무는 오경박사가 시행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구려 시대의 지적제도 요소와 다른 시대의 토지장부·면적단위·토지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구려의 지적제도는 국토 조사와 지도 제작, 토지 파악과 같은 국가 통치 수단으로 이해한다. 대표 표지로는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자주 거론된다.
고려 이후의 토지장부 계열은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전적, 전안처럼 장부 명칭이 중심이 된다.
두락제와 결부제는 후대의 토지 측정·수취 체계와 연결해 파악하는 요소이므로 고구려 표지로 바로 묶기 어렵다.
정전제, 풍백, 봉가, 오경박사 같은 표현은 상고시대나 다른 시대 제도와 섞여 출제되는 대표 함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도전정, 전적, 전안"을 고구려의 토지장부처럼 묶은 점이다. 이런 명칭은 고구려보다 후대의 토지장부 체계로 보는 것이 맞다. 고구려 설명으로는 국토 조사, 지도 제작, 척도와 면적 파악 같은 요소를 잡아야 한다.
② O: 군사작전상·행정상 필요한 지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었다는 설명은 고구려의 지적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고구려는 영토 파악과 통치를 위해 지도 제작과 국토 조사를 중시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두락제와 결부제"를 고구려의 면적단위처럼 적은 점과 "근강구소간전도"를 고구려의 토지도면처럼 적은 점이다. 두락제·결부제는 후대의 토지 측정·수취 체계와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맞고, 고구려의 대표 지적 자료는 봉역도·요동성총도처럼 지도 제작 전통 쪽에서 잡는 것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정전제", "풍백의 지휘", "봉가", "오경박사"를 고구려 지적제도로 묶은 점이다. 이런 표현은 고구려의 지적제도를 설명하는 표지로 보기 어렵다. 고구려는 정전제 실시 여부나 풍백·봉가·오경박사 같은 표현보다 영토 조사와 지도 제작으로 구별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시대가 다른 제도 용어를 한 선지 안에 섞어 놓는 점이다. 특히 ①의 토지장부 명칭, ③의 두락제·결부제, ④의 정전제·풍백·오경박사를 모두 오래된 제도로만 보고 고구려와 연결하면 오답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구려 지적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고구려의 고유 표지인 국토 조사, 지도 제작, 봉역도, 요동성총도 같은 단어가 있는지 본다. 반대로 장부 명칭이 길게 나열되거나 두락제·결부제, 정전제처럼 다른 시대 제도어가 보이면 고구려가 아닌 요소를 섞은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고구려는 봉역도·요동성총도, 후대는 장부명·두락제·결부제처럼 구분하여 기억한다.

NoteBase

문 9. 궁장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방전은 사궁장토라 하며 왕실과 궁가에 지급하는 전토로 궁중 회계기관인 내수사의 전토도 포함된다.

② 2사6궁 중 2사는 내수사 · 어의사이고, 6궁으로는 명례궁 · 용동궁 · 수진궁 · 육상궁 · 선희궁 · 경우궁이 있다.

③ 궁장토로 설정된 토지의 종류는 절수지, 민전매득지, 각 영 · 아문 및 타 궁방의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④ 조선에서는 후궁 · 대군 · 공주 · 옹주 등을 존칭하여 궁방(宮房)이라 하고 각 궁방 소속의 전토를 궁방전 또는 궁장토라고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궁장토의 개념과 대표 체계인 1사7궁, 그리고 궁장토의 성립 방식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궁장토(궁방전)는 조선시대 왕실의 궁·방이 소유하거나 수조하던 토지이며, 통상 내수사전까지 포함해 사궁장토라고도 불렀다.
1사7궁은 궁방의 대표 체계로, 1사는 내수사이고 7궁은 수진궁·어의궁·명례궁·용동궁·육상궁·선희궁·경우궁이다.
궁장토는 절수지, 매득지,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 여러 경로로 형성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궁방전은 궁장토라고도 하며, 내수사전까지 포함하여 사궁장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궁중 회계기관인 내수사의 전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2사6궁", "어의사"이다.
실제로는 2사6궁이 아니라 1사7궁이며, 내수사가 1사이고
수진궁·어의궁·명례궁·용동궁·육상궁·선희궁·경우궁이 7궁이다. 따라서 "2사는 내수사·어의사"라는 서술은 체계의 수와 명칭을 함께 틀리게 적은 것이다.

③ O
궁장토는 절수, 매득, 이속, 투탁, 민전면세 등의 방식으로 설정·확대되었다. 따라서 절수지, 민전매득지,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을 궁장토의 구성 유형으로 본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宮房은 궁방을 뜻하며, 후궁·대군·공주·옹주 등 왕실 구성원에게 속한 전토를 궁방전 또는 궁장토라고 불렀다. 선지의 취지는 궁방 소속 전토의 명칭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궁장토 문제는 낱말 하나를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 문항도 "1사7궁"을 "2사6궁"으로, "어의궁"을 "어의사"로 바꿔 놓아 외형상 비슷해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장토 관련 선지는 먼저 개념, 대표 궁방 체계, 성립 방식으로 나누어 본다. 궁방의 대표 체계를 묻는 선지는 곧바로 1사7궁인지 확인하면 되고, 내수사는 1사, 어의궁은 7궁 중 하나라는 점이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궁장토는 궁방전, 대표 체계는 1사7궁, 오답 함정은 2사6궁·어의사 바꿔치기이다.

NoteBase

문 10. 결수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원시적인 지적으로 과세지의 전모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적 관련 도면은?

① 증보도
② 간주지적도
③ 지세명기장
④ 과세지견취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수연명부를 보완하려고 만든 초기 지적 관련 도면과 장부·간주도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만으로는 과세지의 위치와 전모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원시적 지적도이다.
증보도는 기존 도면에 내용을 덧붙여 보완한 도면이므로 결수연명부 보완용 원시적 지적도를 뜻하지 않는다.
간주지적도는 어떤 도면을 법적으로 지적도로 보아 취급하는 개념이므로 원시적 지적도의 명칭이 아니다.
지세명기장은 지세 부과 내용을 적은 장부이므로 도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증보도를 결수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시적 지적도로 본 점이다. 증보도는 이미 작성된 도면에 변동 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보완한 도면이므로, 정답 표현은 과세지견취도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간주지적도를 원시적 지적도로 본 점이다. 간주지적도는 다른 도면을 일정한 요건 아래 지적도로 보아 취급하는 것이지, 결수연명부 보완을 위해 새로 만든 현장 판독용 원시 지적도가 아니다.
3번 X: 틀린 부분은 지세명기장을 도면으로 본 점이다. 지세명기장은 토지와 세액 관련 사항을 적는 장부이므로, 과세지의 전모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게 하는 도면은 과세지견취도이다.
4번 O: 과세지견취도는 결수연명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원시적 지적도로서 과세지의 위치·형상과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곧바로 파악하게 하는 도면이라는 설명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도면과 장부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3번에 흔들리기 쉽고, 원시적 지적도와 법적으로 지적도로 보는 간주 개념을 섞으면 2번에 걸리기 쉽다. 문제의 핵심 단어는 원시적인 지적도와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기의 성격이 도면인지 장부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원래부터 작성한 지적도인지 아니면 기존 도면을 지적도로 간주하는 개념인지 나누면 된다. 결수연명부 보완, 현장 확인, 원시적 지적도라는 단서가 함께 나오면 과세지견취도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결수연명부의 현장 보완도면은 과세지견취도이고, 지세명기장은 장부이며 간주지적도는 법적 취급 개념이다.

NoteBase

문 11. 조선시대 양전개정론과 세부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도: 현재의 지적도와 유사한 리단위의 전통도를 제작하여 양전을 전통도로 실시하고 지권을 발행

② 한전제: 농민들에게 국가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매매에 제한을 두는 방법

③ 방량법: 농지를 정정방망으로 구획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구획하여 전국의 농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방법

④ 둔전제: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에게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농업용 토지를 분배하여 일률적인 조세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양전개정론에서 전통도, 한전제, 방량법, 둔전제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통도는 리 단위로 토지를 도면화해 양전과 지권 발행의 기초로 삼으려는 구상이다.
한전제는 토지를 경작 기반으로 보유하게 하되 매매를 제한하여 토지 겸병을 막으려는 방안이다.
방량법은 토지를 정정방망으로 재고, 불규칙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처리해 전국 토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측량·구획 방식이다.
둔전제는 국가가 둔전을 설치하고 사람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여 군량이나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전통도는 오늘날 지적도와 비슷한 성격의 토지 도면을 만들어 양전을 실시하고 지권 발행까지 연결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O
한전제의 핵심은 토지를 나누어 경작 기반을 보장하되 매매를 제한해 토지 집중을 막는 데 있다. 선지의 '매매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맞는 포인트이다.

③ O
방량법은 토지를 반듯하게 구획할 수 있는 곳은 정정방망으로, 그렇지 못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처리해 토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려는 방법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에게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농업용 토지를 분배하여 일률적인 조세를 부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둔전제는 국가가 둔전을 설치하고 군인·농민·노비 등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여 군량미나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토지를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토지 제도 문제에서는 '분배', '매매 제한', '도면 작성', '국가 직영 경작'의 키워드가 서로 뒤섞여 출제된다. ④는 둔전제를 토지 분배형 제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에 도면 작성과 지권 발행이 나오면 전통도, 매매 제한이 나오면 한전제, 정정방망·어린도상이 나오면 방량법, 국가가 둔전을 설치해 경작시켜 군량이나 재정을 확보하면 둔전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통도는 도면, 한전제는 매매 제한, 방량법은 구획 측량, 둔전제는 국가 재정용 경작지이다.

NoteBase

문 12.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방전장에 따른 전(田)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전(方田): 사각형 모양의 토지

② 규전(圭田): 삼각형 모양의 토지

③ 제전(梯田):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④ 호전(弧田): 고리 모양의 토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장산술 방전장에서 전의 명칭과 토지 형태를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방전은 네 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토지이고, 규전은 뾰족한 끝을 가진 삼각형 토지이며, 제전은 서로 평행한 두 변을 가진 사다리꼴 토지이다. 호전은 원호를 포함한 활꼴 모양의 토지이고, 고리 모양의 토지는 환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방전(方田)은 이름 그대로 네모반듯한 밭, 즉 사각형 모양의 토지를 뜻하므로 옳다.
2번 O: 규전(圭田)은 홀규 모양에서 온 말로, 한쪽이 뾰족한 삼각형 토지를 가리키므로 옳다.
3번 O: 제전(梯田)은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다른 사다리꼴 형태의 토지를 뜻하므로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고리 모양'이다. 호전(弧田)은 원호가 들어간 활꼴 또는 둥글게 굽은 모양의 토지이고, 고리 모양의 토지는 환전(環田)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호전의 '호(弧)'를 둥근 모양 전체로 막연히 이해하면 고리 모양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둥근 모양 일반이 아니라 원호가 있느냐, 고리처럼 가운데가 비었느냐를 구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의 이름에 들어 있는 한자의 뜻을 먼저 본다. 방은 네모, 규는 뾰족한 삼각, 제는 사다리, 호는 활처럼 굽은 원호라는 기준으로 대응시키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방은 사각형, 규는 삼각형, 제는 사다리꼴, 호는 활꼴, 고리 모양은 환전이다.

NoteBase

문 13. 조선시대 전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6등급으로 구분한 토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전(正田): 항상 경작하는 토지
② 속전(續田): 경작하기도 하고 휴경하기도 하여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③ 강속전(降續田): 오랫동안 버려두어 토질이 저하되었으므로 세율을 감해주는 토지
④ 가경전(加耕田): 사정이 끝난 원장부 밖의 토지를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전세 수취를 위한 토지 분류에서 정전·속전·강등전·강속전·가경전의 개념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전은 항상 경작하는 토지이다.
속전은 경작하기도 하고 휴경하기도 하며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이다.
강등전은 토질이 떨어져 본래 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워 전품을 낮추어 세율을 감해 주는 토지이다.
강속전은 강등한 뒤에도 계속 묵혀 두어 실제로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이다.
가경전은 원장부 밖의 토지를 새로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전은 상경지로서 항상 경작하는 토지를 뜻하므로 옳다.
② O: 속전은 정전처럼 늘 경작하지 않고 경작과 휴경이 섞이는 토지이므로 경작할 때만 과세한다는 설명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강속전"과 "세율을 감해주는"의 연결이다. 토질이 저하되어 전품을 내려 세율을 감해 주는 토지는 강등전이다. 강속전은 강등한 뒤에도 계속 묵혀 두어 경작한 때만 과세하는 토지이다.
④ O: 가경전은 사정이 끝난 뒤 원장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강등전과 강속전이 가장 자주 뒤바뀐다. 강등전은 토질 저하에 따라 등급을 낮추는 단계이고, 강속전은 그보다 더 나아가 계속 묵혀 두어 경작 시에만 과세하는 단계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세율 감경이 나오면 먼저 강등전을 떠올리고, 경작한 때만 과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속전 또는 강속전인지 본다. 이때 강등을 거친 뒤 계속 묵힌 토지이면 강속전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전은 항상 경작, 속전은 경작할 때만 과세, 강등전은 등급 하향, 강속전은 강등 후에도 묵힌 토지, 가경전은 새 개간지이다.

NoteBase

문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여러 공부와 정보를 연계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제공하는 공부이다.

핵심 구분

법률상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과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의 위치'는 독립된 등록사항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본 등록사항이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표시사항과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다.
2번 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건축물대장과 연계되는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다.
3번 X: 법률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독립 항목으로 두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다. 올바르게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목이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번 O: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연계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행위제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3번은 실제 부동산 정보처럼 들리는 '위치'라는 표현으로 함정을 만든 선지이다. 수험생은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인지가 아니라 법률이 등록사항을 어떻게 열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열거 문제는 일상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정보인지보다 조문상 열거 항목인지부터 본다. 토지 표시, 건축물 표시,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권리처럼 법률이 직접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대조하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부동산종합공부는 표시·소유자·이용규제·가격·권리를 등록하고, '위치'는 독립 항목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조사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이용 조사

② 토지 가격 조사

③ 지형 · 지모 조사

④ 토지 소유권 조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실제 조사내용과 현대적 토지이용 조사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권리관계와 과세 기초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다.
토지 이용 조사는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당시 토지조사사업의 핵심 조사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가격 조사는 지가를 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지형·지모 조사는 토지의 형상과 자연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토지 소유권 조사는 소유자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토지 이용 조사는 당시 토지조사사업의 대표적 조사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 찾는 '가장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조사내용'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 조사가 핵심이다.

② X
토지 가격 조사는 실제 조사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오답 후보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토지 가격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에 포함된다.

③ X
지형·지모 조사는 실제 조사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옳지 않은 내용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지형과 지모의 파악은 토지조사사업의 기초 조사에 해당한다.

④ X
토지 소유권 조사는 토지조사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부정답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토지 소유권 확정이 토지조사사업의 중심 목적 중 하나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이 '토지조사'라는 말만 보고 토지와 관련된 모든 조사 개념을 묶어 버리면 ①도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문항은 현대적 토지 이용 개념과 당시 조사사업의 직접 조사사항을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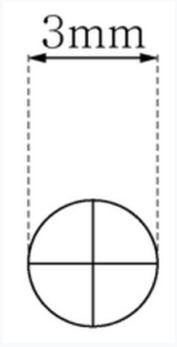
역사적 토지조사사업 문제는 먼저 조사 목적이 권리관계 확정과 과세 기초 확보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 목적에 직접 연결되는 소유권, 지가, 지형·지모는 포함되고, 현대적 활용 개념인 토지 이용 조사는 우선 배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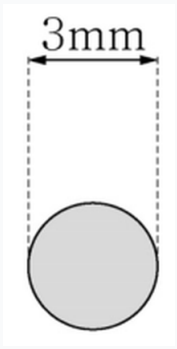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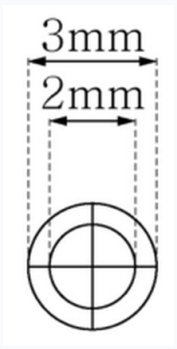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지가·지형지모이고, 토지 이용은 별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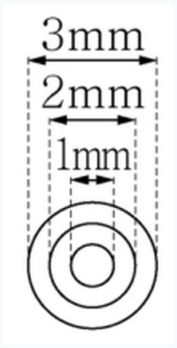
NoteBase

문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삼각점의 기호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5호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도시방법에서 지적삼각점 기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용어 풀이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성과도에서는 다른 기준점과 구별되는 전용 기호로 도시한다.

핵심 구분

별표상 지적삼각점은 직경 3mm의 단일 원 안에 십자선을 넣은 기호이다. 채운 원은 지적삼각보조점, 빈 원은 지적도근점으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직경 3mm의 원 안에 십자선을 넣은 형태로, 별표 제5호의 지적삼각점 기호와 일치한다.
2번 X: 채워진 원은 지적삼각점이 아니라 지적삼각보조점 기호이다. 올바르게는 채우지 않은 3mm 원 안에 십자선을 넣어야 한다.
3번 X: 동심원을 추가한 이중 원형은 지적삼각점 기호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동심원 없이 3mm 단일 원 안에 십자선을 넣는다.
4번 X: 1mm, 2mm, 3mm의 여러 동심원을 겹친 형태도 지적삼각점 기호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3mm 단일 원과 십자선만 표시한다.

오답 포인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모두 원형 계열이라서 원의 채움 여부와 내부 십자선 유무를 놓치면 쉽게 바뀐다. 특히 채운 원을 지적삼각점으로 착각하면 2번으로 유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점 기호 문제는 먼저 원이 채워졌는지, 십자선이 있는지, 동심원이 몇 개인지를 본다. 지적삼각점은 단일 원과 십자선이라는 조합으로 바로 식별된다.

암기 포인트

지적삼각점은 빈 원+십자선, 지적삼각보조점은 채운 원, 지적도근점은 빈 원 단독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지적행정기구는?

<보기>
1898년 7월 6일 전문 24조로 실시한 업무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답·가사·염전·화전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세 조사 차원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소유자를 파악한 것이다. 지번은 자호제를 적용하고 천자문 순서에 따라 붙이되 1자호당 5결로 하며 1자호 내에 있는 토지는 필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5결이 되면 다른 자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① 가계
② 지계
③ 양지아문
④ 지계아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한제국기 토지조사 관련 용어 가운데 실제 업무 수행 주체인 지적행정기구와 조사 결과로 만들어진 문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계는 가옥이나 가옥 대지에 관한 권리문서를 뜻하는 문서명이지 행정기구가 아니다.
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이지 행정기구가 아니다.
양지아문은 1898년 광무양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조사 전담기구로서 자호제, 천자문 순서의 지번 부여, 1자호 5결, 필지별 일련번호 부여 같은 조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계아문은 양전 성과를 바탕으로 지계를 발급하고 관련 사무를 맡은 후속 기구이므로 1898년 7월 6일의 양전 실시 주체와는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계는 토지조사 업무를 수행한 지적행정기구가 아니라 가옥 관련 권리문서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틀린 표현은 기관처럼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계는 문서이고, 업무 수행 기관은 양지아문이다.
② X: 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공증하는 증서이므로 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기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지계를 집행 주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지계는 조사 결과 발급되는 문서이고, 조사 실무 주체는 양지아문이다.
③ O: 1898년 7월 6일 실시된 광무양전에서 전국 토지를 조사하고 자호제를 적용하여 천자문 순서로 지번을 붙이며 1자호를 5결로 정한 업무는 양지아문이 담당하였다. 보기의 시기, 조사 대상, 지번 부여 방식이 모두 양지아문의 업무와 맞는다.
④ X: 지계아문은 지계 발급 등 후속 사무를 담당한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고, 보기처럼 1898년 7월 6일 전문 24조에 따라 전국 토지를 조사하면서 자호제를 운용한 직접 수행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틀린 표현은 양전 실시 주체를 지계아문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해당 업무 수행 기관은 양지아문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지계와 지계아문처럼 이름이 비슷한 용어에 끌리기 쉽다. 또 가계, 지계는 문서명인데 양지아문, 지계아문은 기관명이라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특히 지계아문을 양지아문의 선행 기관처럼 착각하는 점을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택지가 문서인지 기관인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1898년 광무양전, 자호제, 천자문식 지번, 1자호 5결 같은 실무 키워드가 보이면 양전 조사 전담기구인 양지아문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양전 조사와 자호제는 양지아문, 지계는 문서, 지계아문은 후속 발급 사무이다.

NoteBase

문 18. 디지타이징(Digitizing)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Dangling node: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나는 것

② Undershoot: 교차점이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것

③ Overlapping: 점, 선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④ Sliver polygon: 두 개 이상의 Coverage에 대한 오버레이로 인해 Polygon의 경계에 흔히 생기는 작은 영역의 Featur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디지타이징 입력 오류 유형의 정의를 서로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angling node는 선의 끝점이 다른 선과 연결되지 않은 매달린 노드 상태이다.
Undershoot는 선이 교차점까지 닿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오류이다.
Overshoot는 선이 교차점을 지나 더 연장되는 오류이다.
Overlapping은 같은 점이나 선이 중복 입력된 상태이다.
Sliver polygon은 경계 불일치나 오버레이 오차로 폴리곤 경계 사이에 가늘고 작은 조각 면이 생기는 오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나는 것'은 overshoot의 설명이다. 틀린 부분은 'Dangling node'이다.
올바르게는 'Dangling node는 선의 끝점이 다른 선과 연결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2번 O: Undershoot는 교차해야 할 선이 만나지 못하고 모자라게 끝나는 오류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Overlapping은 점이나 선이 중복으로 입력된 상태를 뜻하므로 설명이 맞다.
4번 O: Sliver polygon은 둘 이상의 coverage를 오버레이할 때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가늘고 작은 폴리곤 조각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1번은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난다'는 표현 때문에 overshoot를 dangling node와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선이 짧게 못 미치면 undershoot, 지나치게 넘어가면 overshoot, 끝점이 연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dangling node라는 축으로 구분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오류는 먼저 끝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차점 전에 멈추면 undershoot, 교차점을 지나면 overshoot, 끝점이 연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dangling node이다. 중복 입력이면 overlapping, 오버레이 뒤 가는 면 조각이 생기면 sliver polygon이다.

암기 포인트

못 미치면 undershoot, 지나치면 overshoot, 매달리면 dangling node, 겹치면 overlapping, 가는 면 조각이면 sliver polygon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시 ·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① 「지적법」 제6차 개정 (1991.12.14.)
② 「지적법」 제7차 개정 (1995.1.5.)
③ 「지적법」 제8차 개정 (1997.12.13.)
④ 「지적법」 제9차 개정 (1999.1.18.)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지적법 개정 연혁 중 지방지적위원회 설치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제도가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도 신설 시점과 이후의 용어 정비·보완 개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시·도 단위에서 심의하는 기구이다.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때 중앙 단계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1995.1.5. 개정은 지방지적위원회 설치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제도를 새로 둔 신설 개정이다. 반면 1997.12.13.과 1999.1.18.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용어를 정비하거나 절차를 보완한 개정이고, 1991.12.14.은 이 제도와 무관한 개정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1991.12.14. 개정은 보기의 위원회 신설과 재심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제도는 이때가 아니라 1995.1.5. 개정에서 들어갔다.
틀린 표현: "제6차 개정(1991.12.14.)"
올바른 표현: "지방지적위원회 설치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제도 신설은 1995.1.5. 제7차 개정이다."

② O
1995.1.5. 개정은 시·도지사 소속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불복할 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이다. 보기의 설명과 정확히 부합한다.

③ X
1997.12.13. 개정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등의 행정구역 명칭을 특별시·광역시로 정비하는 등 용어를 손본 개정이다. 보기처럼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제도를 처음 신설한 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8차 개정(1997.12.13.)"
올바른 표현: "1997.12.13. 개정은 제도 신설이 아니라 행정구역 명칭 등 용어 정비 성격의 개정이다."

④ X
1999.1.18. 개정은 이미 존재하던 위원회 제도를 전제로 재심사 청구기간을 늘리고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한 보완 개정이다. 보기처럼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제도를 새로 만든 시점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제9차 개정(1999.1.18.)"
올바른 표현: "1999.1.18. 개정은 기존 제도의 보완 개정이고, 최초 신설은 1995.1.5. 개정이다."

오답 포인트

위원회 제도 자체를 처음 만든 개정과, 이미 있는 제도의 명칭·기간을 조정한 후속 개정을 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1999.1.18.은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계속 보이므로 신설 시점처럼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정 연혁 문제에서 보기 설명에 "설치", "신설", "재심사 청구 허용" 같은 표현이 보이면 최초 도입 개정인지 먼저 본다. 반대로 명칭 변경, 기간 연장, 절차 보완 표현이면 대체로 후속 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신설은 1995.1.5.이고, 1999.1.18.은 보완 개정이다.

NoteBase

문 2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저당권
④ 설정권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 열거 사항이라는 점과 권리명 자체인지, 등기행위의 표현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설정권은 여기서 독립된 부동산물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나 그 표현으로 이해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명으로 열거한다.

핵심 구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처럼 법이 열거한 권리이다. 반면 설정은 각 권리에 대해 할 수 있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설정권 자체가 별도의 등기대상 권리로 열거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지적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아래 O/X는 발문인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1번 X
-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법상 가장 기본적인 등기대상 권리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소유권
- 올바른 표현: 소유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2번 X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된다.
- 틀린 표현: 지상권
- 올바른 표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3번 X
-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저당권
- 올바른 표현: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4번 O
- 설정권은 법이 독립된 등기대상 권리로 열거한 명칭이 아니다. 각 권리의 설정등기는 가능하지만, 설정권 자체를 하나의 권리명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 맞는 표현: 설정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설정권도 하나의 등기대상 권리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는 권리명과 등기행위를 구별하는지를 노린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이 등기대상 권리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조문에 권리명 자체가 열거되는지 본다.
소유권·지상권·저당권처럼 권리명으로 존재하면 등기대상이고, 설정·이전·변경처럼 등기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면 별도 권리인지 한 번 더 걸러 본다.

암기 포인트

등기대상은 권리명으로 외우고, 설정은 등기행위로 구별한다.

NoteBase